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4. 6. 11.(화) 10:00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이정범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4년 5월 30일
- 회부일자: 2024년 5월 31일

3. 제안 이유

- 본 개정 조례안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다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가정의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출생률에 따른 학령인구감소와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다자녀 학생’의 정의를 셋째에서 둘째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신설)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에 포함해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이유

- 현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며 (2021년 0.81명 → 2022년 0.78명 → 2023년 0.72명), 초저출산·학령인구 감소·인구절벽·지역소멸 위기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직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12월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하여, 양육·교육·돌봄·주거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충북의 경우 전국적인 출생아 수 감소 추세와 달리 2023년 7,693명이 출생해 2022년 대비 1.5% 증가했지만, 올해 1분기 충북 출생아 수는 1,913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51명 (-7.3%) 감소하여 전국 평균 감소율 -6.2%보다 높았고, 이 같은 감소 추세는 충북의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제천,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영동 6개 지역의 인구감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충청북도교육청은 현재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졸업앨범비’를 지원하고 있음

다자녀 학생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비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졸업앨범비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충청북도교육청 최근 4년 다자녀 학생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지원항목	연도	지원인원	지원예산	비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2021	5,486	562,550	코로나19 영향
	2022	5,405	1,621,500	
	2023	5,461	1,638,300	
	2024	5,461(예상)	1,638,300	
졸업앨범비	2021	0	0	미지원
	2022	0	0	미지원
	2023	2,373	166,110	
	2024	2,373(예상)	166,110	

자료: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충북의 현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실태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및 교육비 경감지원 정책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자녀에 대한 정의와 지원 대상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출생률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산·학령인구 감소·인구절벽·지역소멸 위기 상황과 2명 이상 자녀를 다자녀 가정으로

규정하여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정부 정책 및 관련 상위법령¹⁾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다자녀 학생’의 정의를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으로 확대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개정함
 -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 12. 15)에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2021년 9월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확대 발표한 후, 관련 법 개정과 함께 학자금·등록금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주택공급 우선 및 매입임대 보증금·전세 임대료 완화, 교통 및 문화시설 이용 할인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또한 이 같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자녀를 2자녀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개정해 나가는 추세²⁾임
 - 따라서 다자녀 학생에 대한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정하는 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안에 부합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다 사료됨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보육의 우선제공)제3항제4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로 규정되어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2) 첨부자료 1

- 안 제3조에 다자녀 가정 지원 시책의 수립·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한 것은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과 지역 사회 학령인구 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대처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 사항이라 판단되며,
- 안 제5조에는 지원계획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세부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다자녀 학생 지원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료됨
- 부칙 규정에 본 조례안의 시행을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은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와 시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속되고 있는 합계출산율 감소로 인한 지방 인구소멸 위기의 현실화 우려 속에 정부와 지방자치가 범정부·범국가적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양육 및 교육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 기조에 맞춰 충청북도교육청의 다자녀 가정 학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고 다자녀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의적으로도 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됨
- 또한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 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

- 다만, 충청북도교육청은 그동안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을 세자녀 기준에 따라 지원해 왔으므로, 개정된 조례 규정에 따라 둘째 자녀를 기준으로 한 다자녀 지원 대상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시행 계획 및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은 지자체에서도 중요한 정책인 만큼 도교육청 유관 부서 간 협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예산의 중복이나 형평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사업 선정과 체계적인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첨부자료 1]

타 시·도 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현황

순	시도	조례명	다자녀 정의	공포일자	제정·개정
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23. 6. 2.	일부개정
2	경기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23. 12. 22.	일부개정
3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 또는 입양 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인 학생	'23. 11. 9.	일부개정
4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인 학생	'23. 4. 10.	일부개정
5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18. 1. 2.	제정
6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23. 4. 28.	일부개정
7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인 학생	'23. 10. 11.	제정
8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24. 1. 11.	제정
9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23 2. 28.	제정
10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17. 4. 27.	제정
11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22. 11. 7.	일부개정
12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19세 미만인 학생	'23. 8. 3.	일부개정
13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23. 11. 10.	타법개정
1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21. 11. 23.	일부개정
15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22. 2. 10.	일부개정
16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18. 4. 20.	제정

자료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재편집